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4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1명)

찬 성 자 : 노식래·이영실·박기재·박순규·  
양민규·오중석·이동현·임종국·  
한기영·홍성룡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4년 단위 교육연수계획에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과 총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마.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를 “교육연수활동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연수 사업”을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 교육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을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맞”을 “등 추진실적 점검 맞”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구성하고”를 “구성하되”로, “사람, 의원”을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로, “중”을 “3명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를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개별적으로”를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교육연수활동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회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u>교육연수활동의 지원</u> <u>에</u>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 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 상을 위한 <u>교육연수 사업</u>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 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u>교육 연수</u>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 ----- ----- <u>교육연수활동</u> <u>등에</u> ----- -----.</p> <p>제3조(기본원칙) ① ----- ----- ----- ----- <u>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외부 기관의 교육연수</u>----- -----.</p> <p><u>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u> ① <u>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 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u></p>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  
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  
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  
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  
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  
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  
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  
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  
-----  
----- 제  
8조-----  
-----  
-----  
-----.

②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 (생략)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교육연수-----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제2항제5호-----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  
- 제5조-----  
-----  
-----.

② ----- 제7조제1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생략)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
4. (생략)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① -----

----- 심의·자문하기 -----  
-----.

1. (현행과 같음)
2. ----- 수립·변경
3. ----- 등 추진실적 점검 및 -----
4. (현행과 같음)

② ----- 9명 -----  
구성하되 -----  
-----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  
----- 3명 이내의 범위 -----.

③ -----  
-----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  
중에서 각각 -----.

<삭제>

⑤ (생략)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예산 지원) ① -----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 교육연수 활동  
등-----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제1항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은 해당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내 용	2020년 사업비
의원역량개발(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li> <li>○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li> <li>○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의회 과정, 의정실무 과정, 조직개발 과정)</li> <li>○ 민간기관 위탁교육</li> </ul>	233,800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87,99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990천원으로 연평균 37,59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조례안 제4조 제2항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설치 장소는 시의회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운영은 2020년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총 비용 ≙ 187,990천원(연평균 37,59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원역량개발센터 운영 (제4조제2항)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소계(b)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 총 비용(b-a)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2) 의원역량개발센터 운영 ≙ 187,990천원

$$\text{○ 5년간 교육·홍보 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37,598천원 × 1식 = 37,598천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2019년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7,598천원을  
준용하여 산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